



스팸문자 폭탄 처벌 가능하다

“00 캐피탈, 무담보 무방문으로 즉시 대출 가능합니다” “기호00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출 등 각종 광고문자에 더해 선거문자까지 스팸문자가 넘치고 넘친다.

전업주부 A씨는 쇼핑센터 회원 가입을 제외하면 대외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노출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대출광고, 선거광고 문자가 계속 수신된다. 이 경우 대출업자나 선거후보자의 광고문자 발송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경우 쇼핑센터의 고객정보 유출도 의심된다. 만약 쇼핑센터가 A씨의 정보를 넘겨줬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현행 법제상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이 기본법으로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쇼핑센터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업자가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숫자를 조합해 대량으로 광고 문자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기술적으로 자동 생성하는 조치를 한 때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선거광고의 경우를 보자.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가

5회까지는 광고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광고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발송할 수는 없다.

그럼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센터는 어떨까.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한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와 별도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사업 매출액 1%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휴대폰 통신사업자, 여행사, 학원 외에도 쇼핑센터, 호텔, 콘도미니엄, 대형마트, 백화점, 렌터카업자, 결혼중개업자, 병원, 정유회사, 골프장, 서점, 영화관 등 대다수 업종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쇼핑센터가 A씨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대출업체 및 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했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A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대출업체 및 선거 후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쇼핑센터가 해킹을 당해 A씨의 번호가 유출된 경우라면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쇼핑센터가 평소 충실히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정보 관리에 신경 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보안시스템 구축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의 도난·누출·변조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쇼핑센터가 고객정보를 암호화 처리하고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갖춰 관리하지 않았다면 A씨가 쇼핑센터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즉, A씨 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쇼핑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인당 손해액에 대해, 최근 법원은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리니지 사건'에서 5만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은행 사건'에서 20만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LG텔레콤 사건'에서 5만원을 인정한 바 있다. ■